

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

행정법상 법률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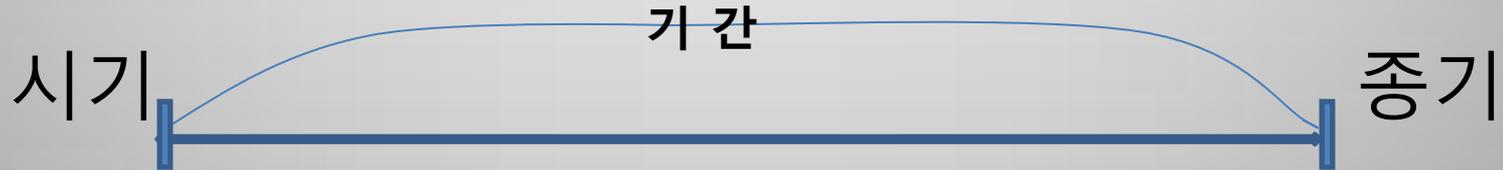
- 행정법상 법률요건
 - 행정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사실
- 행정법상 법률사실
 - 행정법상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



공법상 사건

- 행정법상 법률사실 중 사람이나 행정주체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

① 기간



② 시효

일정한 사실관계가 지속되면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
행정법관계에서 원칙적인 시효기간은 5년

③ 제척기간

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(쟁송법상의 제소기간)
기간의 경과로 소멸효과 발생, 중단제도 없음

공법상 사무관리

-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
- 일반적 규정없음 (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)
- 실제로 그 예는 많지 않음
 - 행정주체가 다른 행정주체를 위하여 하는 사무관리:
실무상 거의 존재 X
 - 행정주체가 사인을 위하여: 전형적 유형
(특별감독 하의 사업의 강제관리행위, 재해구조, 사망인 관리와 같은 보호관리)
 - 사인이 행정주체를 위하여: 비상재해나 긴급 시
행정사무의 일부를 관리하는 경우

공법상 부당이득

-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,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
-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세하였으나 이후 당해 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세의 과오납, 사인의 법적 근거 없는 국공유지 사용
- 소멸시효기간 (다른 규정이 없으면) 5년
- 부당이득의 성질: 공권설(당사자소송)/사권설

사인의 공법행위

-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
-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
 - 내용상 구속력, 공정력, 존속력, 집행력 등 우월적 효력이 없음
 - 공법행위의 실현을 목적으로
 - 사법행위에 비해 공공성, 객관성, 형식성을 가짐
-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v. 행정요건적 공법행위

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

- 자체완성적 행정행위

- 하자가 보정되기 전까지 효과발생 X

- 행정요건적 행정행위

- 사인의 신청, 신고, 동의에 하자가 있으면?

1설: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발령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- 효력에 영향 X

필수적 전제요건인 경우 - 행정행위를 무효로

2설: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

민원사무 :

'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' 읽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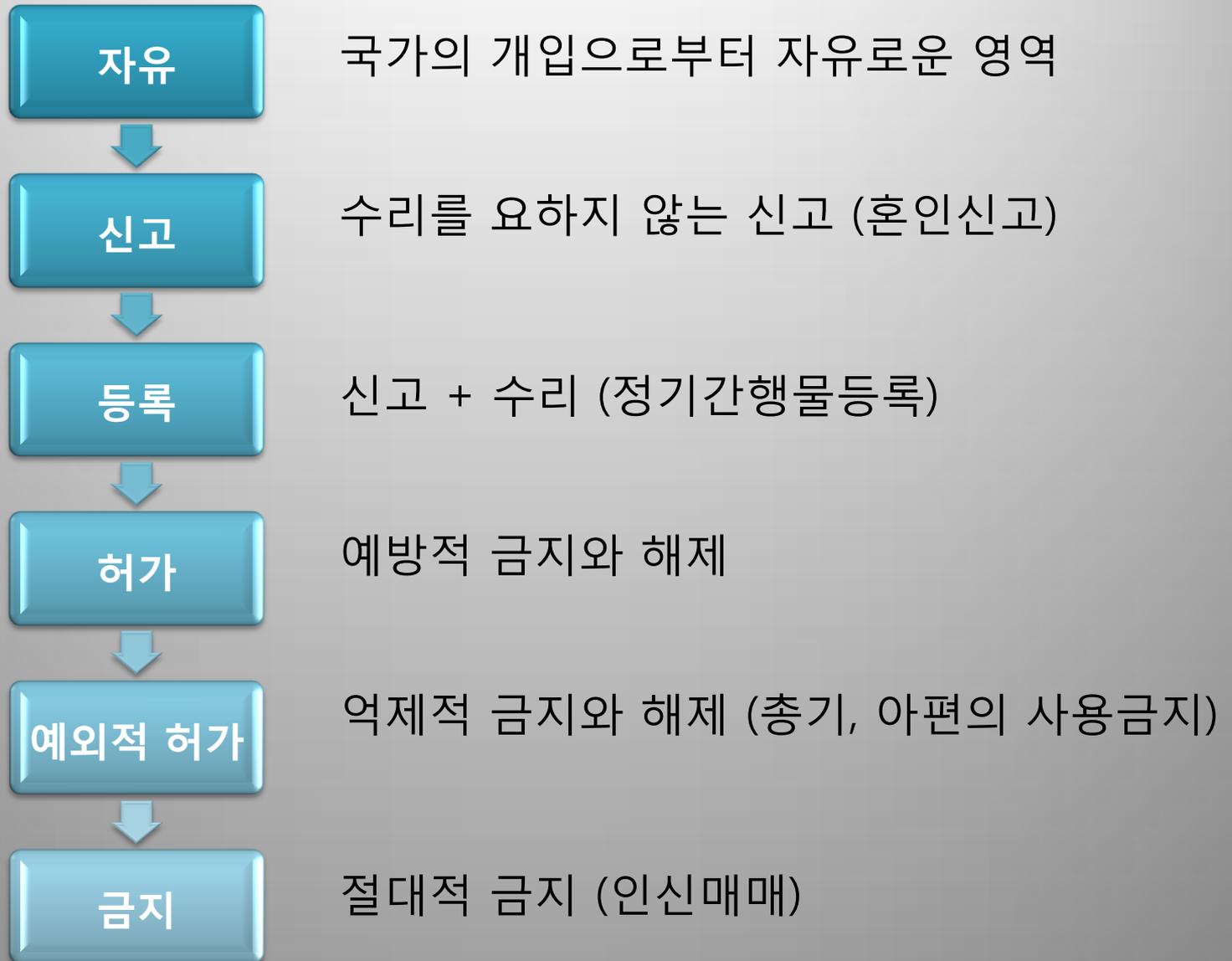
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

: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

- 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
- ②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(등록)
 - cf) 단순한 사실로서의 신고 - 법적 행위 아님

- 구별기준: 법령의 목적, 관련 조문의 해석
- 양도대상의 영업종류에 따라 성질을 판단해야 함

금지의 유형 (자유의 제한과 해제)



신고의 종류

-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
 -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
 - 혼인신고, 수영장업, 체육도장, 골프연습장
 - 형식적 심사도 하지 않음
-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
 -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 통지+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
 - 수리: 행정청이 사인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(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/등록)
 - 형식적 심사 (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음)

- 신고의 요건
- 신고의 효과
 - 적법한 신고 :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한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하면
 - 부적법한 신고
- 수리의 거부
 - 자체완성적: 거부해도 의미 없음, 신고자체로 효력이 발생함
 - 행정요건적: 위법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